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경과

2024. 7.10.(수)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

해당 내용은 대한체육회(이하'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이하'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게 된 경과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요약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 주요경과

- (2024.5.23.) 협회 이사회에서 관리단체지정 관련 소송 진행의 건을 심의·의결함.

· 관리단체 지정 시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소송 진행을 승인하며, 변호사 선임은 직무대행에게 위임함.

- (2024.5.30.) 협회(채권자, 원고)에서 체육회(채무자, 피고)를 상대로 관리단체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소 제기

- (2024.5.31.) 제31차 체육회 이사회,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1개월 내 (6.30.) 협회 정상화를 위한 관련 자료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조건으로 관리단체 지정 유예 의결함.(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1개월 후 자동으로 관리단체 지정)

· 채권자가 협회의 잔여 채무를 전액 탕감한다는 채권자의 이사회 의결 증빙자료
· 채무 전액 탕감 약속서 등의 증빙자료

- (2024.6.5.) 협회 총회에서 6.22. 조기선거를 실시하도록 회장선거 재개 추진 심의·의결함.

· 우선적으로 조기선거(2024.6.22.)를 실시하고 안 될 경우, 회장직무대행에게 날짜를 위임함.

- (2024.6.7.)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자(3명) 및 선거일(6월 23일)로 확정함.

· 입후보자 3명으로 유지하고 선거날짜는 6.23.(일)에 실시

- (2024.6.10.) 협회에서 체육회로 선거재개 및 선거인 배정 예외 승인요청

· 6.5.(수) 협회 총회, 6.7.(금) 협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를 토대로 선거인 수 및 선거인 후보자 추천 배수 등 예외 승인 요청

- (2024.6.14.) 체육회에서 협회로 관리단체 지정 유예기간 동안 채무관계 해결이 우선이며 협회의 회장선거 재개로 추가적인 혼란 야기 우려됨에 따라 회장선거 중단 요청함.

· 오는 6월 23일에 회장선거를 실시하기로 선거일을 결정한 것에 대해 체육회의 지시사항과 체육회 집행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명백히 따르지 않는 행위임.
· 체육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관리단체 지정 유예기간 동안 채무관계 해결은 물론 관리단체 지정 사유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는 불필요한 소송제기와 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판단으로 인해 오히려 협회 운영의 파행을 초래함에 심히 우려됨.
· 체육회는 귀 협회가 관리단체 지정 사유를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귀 협회의 회장선거를 강행하는 것이 귀 협회의 추가적인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회원 종목단체 규정 제55조(제한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체육회 정관 제10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회 정관 제12조(관리단체의 지정)제1항제1호 에도 해당되어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
· 귀 협회는 회장선거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고, 귀 협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체육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순차적으로 해결바람.

- (2024.6.17.) 협회에서는 체육회에 독립적, 자율적으로 선거 재개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함.

· 우리 협회는 귀 회가 제31차 이사회가 의결한 관리단체 지정 조건부 1개월 유예기간 내, (주)미디어월의 공증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작금의 채무 상태에서도 협회는 (주)미디어월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회 운영을 무리 없이 해결하고 있고, 선거중단 8개월여 동안 협회의 고충의 충분히 헤아려 주시어 협회가 독립적, 자율적으로 선거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귀 회의 승인을 재차 요청함.

- (2024.6.17.) 체육회는 관리단체 지정 사유 해소 전에 회장선거 강행은 실익이 없음과 체육회 지시사항 미 이행 시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 위반으로 관리단체 지정사유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함.

· 체육회는 귀 협회가 관리단체 지정 사유를 해소하기 전에 회장 선거를 강행하는 것은 단체의 운영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를 강행할 경우 단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추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귀 협회는 관리단체 지정사유를 해소한 후 체육회의 안내에 따라 회장 선거를 재개바람.

- (2024.6.18.) 체육회는 협회의 집행부 및 대의원들에게 협회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 안내함.

- 귀 협회의 집행부 및 대의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발송한 공문을 반드시 공유바람.

- (2024.6.19.) 협회에서는 체육회에 협회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회장선거 재개하겠다고 알려음.
- (2024.6.20.) 체육회는 협회에 채무관계 추진경과를 제출토록 요청하였고, 협회에서는 미디어월 측과의 협의 중임을 알려음.

- 6.11. 미디어월 측에서 협회에 발송한 내용에 따르면,
 - ▲ 채권 및 채무 관계에 대한 결과보고서(백서)를 홈페이지에 공지
 - ▲ 관리단체 미 지정되어 정상화된다는 조건 충족 시 잔여 채무 전액 탕감함.
 - ▲ 추후 육사테니스장 운영권 확보되는 경우, 그 권한을 미디어월에 이관
- 이에 협회에서는 조율 중임을 알려음.

- (2024.6.21.) 체육회는 협회와 미디어월 간의 채무관계가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함.

- 귀 협회는 유예기간 동안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채권, 채무 관계가 소멸되는 법적 보장을 받아야 하며 그 조건을 충족한 자료를 유예기간 내에 체육회에 제출하여 관리단체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 미디어월 측에서 제안한 관리단체 지정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동 사안은 귀 협회와 채권자 간의 채무 관계가 독립적으로 우선 해결되어야 함을 채권자와의 조건 협의에 참고바람.
- 귀 협회와 채권자 간 협의사항이 전제조건임을 반드시 숙지바람.

- (2024.6.23.) 협회 회장선거를 실시하여 주원홍이 당선됨.
- (2024.6.24.) 협회, 체육회에 미디어월 측 이사회 회의록 및 확약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였으나,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라는 조건부 확약서를 받아음.

- 미디어월은 협회가 체육회의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을 경우,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가 미디어월에 부담하는 총 채무 중 2024년 6월 20일 기준 잔여 채무인 4,637,872,047원(원금 전액 및 이자 일부) 및 장래에 발생할 지연이자를 전액 면제할 것을 확약함.
- 6.20. 실시한 미디어월 이사회 회의록도 공증 받아 제출함.

- (2024.6.28.) 체육회는 협회에 미디어월로부터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를 받아야만 관리단체 지정사유 해소가 되므로 수정 제출을 요청함.

- 채무관계 관련 자료에 대해 법률 자문한 결과를 제31차 체육회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장 및 부회장단의 최종 검토한 결과, 채권자는 체육회가 귀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아야만 채무 면제를 해주겠다는 조건은 선후가 바뀐 내용으로 유효한 채무 탕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 받아야만 관리단체 지정사유가 해소된다고 판단하므로 오는 7월 7일(일)까지 확약서를 수정하여 제출바람.

- (2024.7.2.) 협회는 체육회가 협회를 관리단체 지정하지 않고 선출된 회장의 인준을 약속하면,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를 채권자에게 요청하겠다고 회신함.

- 우리 협회는 협회와 (주)미디어월 간 「채무 전액 탕감」 이사회 회의록 및 확약서 공증 외에도, 5월 30일, 6월 25일 두 차례 대 국민 기자회견에서 밝힌 협회 정상화를 위한 (주)미디어월의 대승적 차원의 약속과 이로 인한 협회와 미디어월 간 신뢰와 협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체육회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사료됨.
- 우리 협회 법률 자문 결과, 귀 회에서 요청한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 제출 시, 상호 신뢰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을 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회장 인준을 약속해 준다면, 요청기한 내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를 (주)미디어월에 요청하겠음.

- (2024.7.4.) 체육회는 협회의 요구사항을 단호히 거부하고,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의 제출이 선행되고 기한 내 제출을 요청함.

- 귀 협회와 채권자 간의 채무관계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지바람.
- 귀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사유 해소 여부, 귀 협회에서 시행한 회장 선거의 적정 여부, 해당 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인준 여부 등은 각각 독립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하나 귀 협회가 이를 혼동하고 있음.
- 귀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와 회장 당선인의 회장 인준 여부는 체육회 및 귀 협회의 「정관」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어떠한 "거래"의 대상이 아님.
- 체육회는 귀 협회가 일종의 거래나 협상을 통해 체육회로부터 얻고자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귀 협회는 이와 같은 시도를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람.
- 체육회는 귀 협회가 채권자로부터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를 받아야만 귀 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해소된다고 판단할 수 있음.

- (2024.7.5.) 협회는 채권자의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와 함께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체육회와 협회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회신함.

- 채권자의 기한 내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와 함께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체육회와 협회의 의견 차이가 있음.

- (2024.7.9.) 체육회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회장 및 부회장단 회의를 통해 관리단체 지정 의결함.

- 채권자의 채무면제 확약서는 선후가 바뀐 내용이고 법적분쟁과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체육회의 수정 제출 요구에 협회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관리단체 지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했음.